

환경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일부 항목 삭제 및 오염물질명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일반보일러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8(4)
포름알데히드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별표 15 제1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불소화합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7(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9(12)
납화합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0.16(12)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36(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8(12)
크롬화합물 (ppm)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0.15(12)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0.19(12)

별표 15 제1호가목에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4)
일산화탄소 (ppm)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45(12)
스티렌 (ppm)	가) 스티렌 모노머 제조시설	16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티렌 제조시설	16

별표 1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6(15)
	(2)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7)
	(3)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12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5)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리 처리시설	150

별표 15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9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24 5
납화합물 (mg/Sm ³)	가)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로	1.2
아연화합물 (mg/Sm ³)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로	3 3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탈지/화성처리/산알칼리처리 시설	150

별표 15 제1호가목에 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19(4)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8(12)
황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20(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산 재생시설	180(8)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100(4)
황화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5(12)

별표 15 제1호가목에 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35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다)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 폐가스소각시설	50(12)
먼지 (mg/Sm3)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25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진시설	20
황산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160(8)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납화합물 (mg/Sm3)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0.8
아연화합물 (mg/Sm3)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 용해시설	3

별표 15 제1호가목에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일산화탄소 (ppm)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인 시설)	48(12)
시아나화수소 (ppm)	도료 제조시설	3
벤젠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5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5
	다) 도료 제조시설	5
포름 알데히드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6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6
탄화수소 (ppm)	가) 염료 제조시설	180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	180
	다) 도료 제조시설	180
	라) 플라스틱·고무첨가제 제조시설	180
크롬화합물 (mg/Sm3)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	0.3

별표 15 제1호가목에 9)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	25

별표 15 제1호가목에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00
염화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100
불소화합물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2 6
페놀화합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별표 15 제1호가목에 12)는 현행 11)과 같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3)는 현행 12)과 같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크롬화합물 (mg/Sm ³)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페놀화합물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별표 15 제1호가목에 15)는 현행 14)과 같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영 별표 1 제4호(기초화학)~22호(시멘트)에 따른 업종(보일러)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유연탄 사용시설	10(6)
황산화물 (ppm)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91(6)
질소산화물 (ppm)	가) 액체연료(부생연료유)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나) 기체연료(LNG)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8(4)

	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

별표 15 제1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가목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6)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